

## [별첨 1]

### I.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(규칙 제2조제1항 관련)

####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**제1조(목적)**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합니다.) 회원이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피공제자: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(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)을 말합니다.
2. 공제등록증권: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.
3. 지방자치단체 :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  - 가.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, 광역시, 도 내지 시, 군, 구
  - 나.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, 지방공단 및 그 외의 출자법인 등
  - 다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,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, 단체 및 법인
4. 지방자치단체시설 : 지방자치단체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- 가. 본청사, 지소, 출장소 등의 청사
  - 나. 각급학교(맹아학교, 농아학교, 간호학교, 유치원, 유아원 등의 학교 및 보육원을 포함합니다)
  - 다. 아동복지시설, 노인복지시설, 보호시설, 정신박약자원호시설, 신체장애인호기자생원호시설, 모자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
  - 라. 각종 보양시설
  - 마. 마을회관, 주민회관, 도서관,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
  - 바. 체육관, 육상경기장,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
  - 사. 농림, 수산, 가공시설, 육모시설, 집·출하시설 등의 산업시설
  - 아. 상하수도 시설,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생활환경시설
  - 자. 공원
  - 차. 항만시설
  - 카.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
5. 배상책임 :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.
6. 법률상의 배상책임: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 보다 가중

된 배상책임(계약상의 가중책임)은 제외합니다.

7. 신체장해: 신체의 상해,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.
8. 재물손해: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- 가.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
  - 나.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
  - 다.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
9. 사고 : 급격하게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, 계속적,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.
10. 1회의 사고 :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, 반복적,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.
11. 공해물질 : 연기, 증기, 매연, 연무, 산, 알카리, 화학물질 및 폐기물(재생,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)을 포함한 고체, 액체,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.
12. 보상한도액 : 공제회와 회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17조(보험금 등의 지급한도)에 따라 공제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일임 받은 손해보험사(이하 “보험사”라 합니다.)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.
13. 자기부담금 :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제 등록을 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.
14. 보험금 분담: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(각종 공제회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)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.
15. 대위권 :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.
16. 연단위 복리 : 보험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.
17.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: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
18. 공제기간 : 공제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
19. 영업일 : 공제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, 토요일,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.
20. 도로 :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한 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·광역시도, 지방도, 시도, 군도, 구도를 말하며 터널, 교량, 도선장,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합니다.
21. 자동차 :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,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,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.  
그러나 아래의 차량(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)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
  - 가.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
  - 나. 피공제자가 소유,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
  - 다.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
  - 라.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,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

###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

(1) 파워크레인, 쇼ベル, 로다, 굴삭기, 천공기

(2) 그레이디, 스크래퍼,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

마. 위 가 내지 라 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,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며,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

(1) 에어콤프레셔, 펌프, 발전기(분무용, 용접용, 빌딩청소용, 지질 조사용,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)

(2)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

바. 위 가 내지 라 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.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.

(1) 제설, 도로의 보수관리(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) 및 도로 청소용 장치

(2)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,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

(3) 에어콤프레셔, 펌프, 발전기(분무용, 용접용, 빌딩청소용, 지질조사용,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)

## 제 2 판 공제등록의 성립과 유지

**제3조(공제등록)** 공제등록은 회원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-1호서식에 의한 공제등록신청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.

**제4조(약관의 제공)**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.

② 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**제5조(등록의 무효)** 회원,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, 이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.

**제6조(보장의 시기 및 종기)** ① 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. 그러나,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,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.

② 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공제등록 신청을 받고,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장을 합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
1.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

2. 제25조(등록전 알릴 의무)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보